

## 2015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

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『2015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·연구기관 등 주관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15년 1월 2일  
중소기업청장

### 1. 사업개요

#### □ 사업목적

- 대학·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향상

#### □ 지원규모 : 165억원

#### □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
#### □ 지원분야

-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·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(쿠폰) 방식으로 장비이용료 지원
-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대학·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시험·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 지원

## 2. 신청자격

### □ 참여기업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-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
  -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  - 부도 또는 휴·폐업중인 중소기업
  -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
  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

### □ 주관기관

-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의 도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를 10대 이상 보유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
  -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
  -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
  -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
  -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
  -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원
  -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자
  -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인증기관
  -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연구법인
  -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(단, 대기업 관계회사 제외)

-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
  -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  -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
  -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
  -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

### 3. 지원금액 및 한도

#### □ 출연금 지원기준

- 정부출연금 : 총 장비이용료의 60 ~ 70% 이내
- 기업부담금 : 총 장비이용료의 30 ~ 40% 이상

구 분	정부지원금	기업부담금
창업기업 (업력 7년 이하)	70% 이내 (최대 3천만원)	30% 이상 (현금)
일반기업 (업력 7년 초과)	60% 이내 (최대 3천만원)	40% 이상 (현금)

#### □ 바우처 구매

- 장비이용을 위한 바우처는 예산소진 시까지 정부지원금(최대 3천만원 한도)과 기업부담금을 합산한 최대지원 한도 내에서 구매 가능
  - 참여기업 지원한도 내에서 사용완료 후 추가구매 가능
  - 단, 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용기간\* 내에 사용하지 않아 50%이상 바우처를 환불받을 경우 사업기간 내에 재구매 불가

\* 바우처 사용기간 : 구입일로부터 최대 60일까지(이후 환불조치)

#### 4. 신청기간 및 방법

##### □ 참여기업 신청기간

- 신청접수 : 2015년 1월 28일 ~ 12월 31일(예산 소진 시까지)

##### □ 주관기관 신청기간

- 신규신청 : 2015년 1월 2일 ~ 2015년 1월 16일(15일간)

- 기존 주관기관 : 2015년 1월 2일 ~ 2015년 1월 9일(8일간)

\* '14년 주관기관은 서면평가, 현장평가 등을 생략하고 선정

\* 단, '14년 주관기관 중 사업 수행실적 상위 20% 및 사업비 2억원 이상 기관은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선정

##### □ 신청방법 : 온라인(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, 이하 "종합관리시스템") 신청·접수

- 종합관리시스템 : <http://www.smtech.go.kr>

#### 5. 선정절차

##### □ 참여기업 선정절차

- 전문기관(산학연협회)이 신청기업의 업력 및 참여제한 여부 확인

- 관리기관(지방중기청)이 신청기업 자격여부에 대하여 서면검토 후 결과를 전문기관에 통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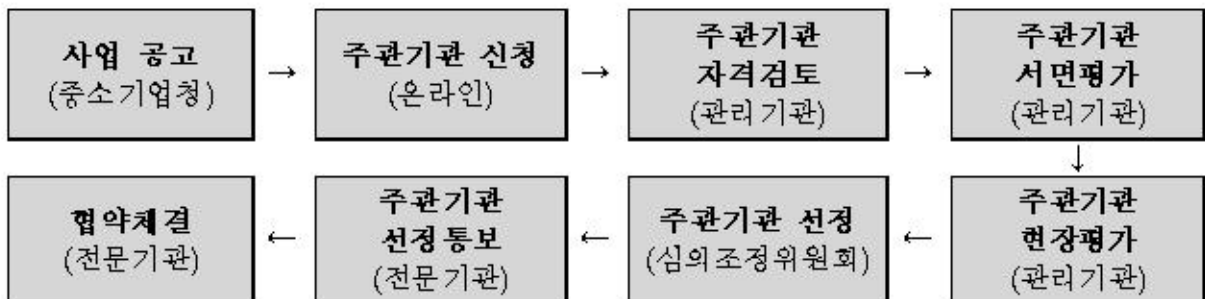
- 전문기관은 당해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평가점수에 따라서 사업 참여 최종 승인

- 신청기업은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후 2015년도 사업기간 내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

## □ 주관기관 선정절차

- 관리기관이 신청기관의 참여자격 및 참여제한 여부 검토, 서면·현장평가 후 전문기관에서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선정
- 주관기관으로 선정통보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장비 등록
- 주관기관은 연구장비 등록 완료 후 7일 이내에 관리기관, 전문기관과 3자 협약체결

### < 주관기관 선정절차 >



\* (관리기관) 지방중소기업청, (전문기관) 한국산학연합회

## 6. 기타사항

-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'15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통합공고문, 동사업의 관리지침에 따름

## 7. 문의 및 확인

- 문의처

부서명	전 화	문의사항
중소기업 R&D 콜센터	1357	신청·접수 및 사업문의 등

○ 관리기관(지방중소기업청)

관리기관명	전화	주소
서울지방중소기업청	02-2110-6363	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
부산·울산지방중소기업청	051-601-5145	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
대구·경북지방중소기업청	053-659-2505	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침단로 122-11
광주·전남지방중소기업청 (제주시험연구센터)	062-360-9160 064-723-2101	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(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-21)
경기지방중소기업청	031-201-6977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
인천지방중소기업청	032-450-1174	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
대전·충남지방중소기업청	042-865-6143	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
강원지방중소기업청	033-260-1644	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
충북지방중소기업청	043-230-5334	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
전북지방중소기업청	063-210-6451	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
경남지방중소기업청	055-268-2563	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

※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

-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: <http://www.smtech.go.kr>
-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: <http://www.smba.go.kr>
- (사)한국산학연합회 홈페이지 : <http://auri.or.kr>